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포함〉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90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포함	2

I. 개요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90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4.

(3) 회 부 일 : 2025. 12.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성별·나이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II. 검토의견

1. 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u>생애주기별</u> 자살예방대책	3. ----- -- <u>생애주기별, 성별</u> -----
4. ~ 14. (생략)	4. ~ 14.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¹⁾와 제11조²⁾에서는 자살예방정책 및 자살실태조사에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성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7조³⁾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기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도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자살로 인한 성별 사망자 통계를 보면 남성의 비율이 전체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68.9~71.3%에 이르는데, 개정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성별 자살 사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남성	여성
2020	13,195 (100%)	9,093 (68.9%)	4,102 (31.1%)
2021	13,352 (100%)	9,193 (68.9%)	4,159 (31.1%)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1.>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아동·청소년·청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5.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13.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
14.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연도	계	남성	여성
2022	12,906 (100%)	9,019 (69.9%)	3,887 (30.1%)
2023	13,978 (100%)	9,747 (69.7%)	4,231 (30.3%)
2024	14,872 (100%)	10,605 (71.3%)	4,267 (28.7%)

*자료: 보건복지부

□ 참고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성별 대책이 분리되어 계획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늘어나는 20·30대 여성 1인 가구⁴⁾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교육·가족 상담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있고,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남성(26.6%), 60대 남성(25.5%)인 점을 고려하여 고독사 예방·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입장임⁵⁾.

□ 한편, 안 부칙은 시행일⁶⁾에 대하여만 두고 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다. 관계 부처 의견

□ (보건복지부) 자살 양상은 성별에 따라 위험요인이나 수단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자살예방정책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제고하

4) 20·30대 여성 1인 가구: ('19) 90만 3,000 가구 → ('20) 101만 8,000 가구 → ('21) 111만 가구 (통계청)

5)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16.5%~19.5%임(2022년 전체 사망자 중 자살로 인한 사망 비율은 4.2~4.7%).

6)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25. 9.),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 4.) 등에서 성별을 고려한 과제를 포함 및 추진 중임.

문 의 처
02)6788-5498